

2. 3.30 대책 입법내용

3.30 대책은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서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지역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되어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증적으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세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한 대체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농지(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은 개정법률 공포·시행일(2006.12.28) 이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8.31 대책보완 입법내용(2006.9.1 시행)

이는 8.31 부동산대책의 실행에 따른 공시가격인상(전국 평균 14%) 등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서민주택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전년대비 150%인 세부담 상한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조정하였다.